

##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05. 6. 30 규칙 제 412호  
일부개정 2011. 1. 11 규칙 제 628호(제명개정)  
일부개정 2012. 3. 14 규칙 제 672호  
일부개정 2015. 2. 2 규칙 제 778호  
일부개정 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(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 
일괄개정규칙)  
일부개정 2023. 6. 30 규칙 제1109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. 11, 2021. 12. 20>

제2조 삭제 <2023. 6. 30>

제3조(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) 「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시설운업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,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2. 2, 2023. 6. 30>

1. 운영계획서(수입 및 지출서 포함)
  2. 청소년단체 신고필증(법인의 경우 정관, 등기부등본)
  3. 재산목록(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)
  4. 사업계획서(사업개요 및 수입·지출 계산서 포함)
  5. 대표자 사용인감계
  6.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
  7.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
  8.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
  9.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[전문개정 2011. 1. 11]  
[중전 제2조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제4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15. 2. 2>

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·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. 단,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·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, 1개 법인·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. <개정 2015. 2. 2>

[본조신설 2012. 3. 14]

제5조(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)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. <개정 2015. 2. 2>

1. 위탁사무,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
2.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
3.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
4.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
5. 전문 인력 확보 현황
6.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
7.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
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12. 3. 14]

제6조(이용신청·철회 등)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(변경)승인 신청서를,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(변경)승인 신청서 및 이용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2. 2, 2023. 6. 30>

②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. <개정 2015. 2. 2, 2023. 6. 30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
2.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
3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

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·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<개정 2015. 2. 2, 2023. 6. 30>

[전문개정 2011. 1. 11]

[중전 제3조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[제목개정 2023. 6. 30]

제7조(이용의 제한)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14, 2015. 2. 2>

1. 화재위험, 악취,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2. 음주, 흡연,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
3.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[본조신설 2011. 1. 11]

[중전 제3조의2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[제목개정 2023. 6. 30]

제8조(이용료 등 감면신청)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. 11, 2015. 2. 2, 2023. 6. 30>

[중전 제4조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[제목개정 2023. 6. 30]

제9조(이용료 등 반환신청)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

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1. 1. 11, 2015. 2. 2, 2023. 6. 30>

[중전 제9조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[제목개정 2023. 6. 30]

제10조(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) 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. 11, 2012. 3. 14, 2015. 2. 2>

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1. 11, 2012. 3. 14, 2015. 2. 2>

[중전 제6조에서 이동 <2012. 3. 14> ]

#### 부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규칙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「용인시청소년수련원운영및이용조례 시행규칙」은 폐지한다.

부칙 <2011. 1. 11 규칙 제62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2. 3. 14 규칙 제67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5. 2. 2 규칙 제77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12. 20 규칙 제1060호,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6. 30 규칙 제110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삭제 <2023. 6. 30>

[별표 2] <개정 2015. 2. 2>

수탁기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(제4조 관련)

심사기준	심사항목	배점
총계		100
사업수행기관의 적격성	○ 법인(단체)의 유형 및 설립목적	10
시설운영의 전문성	○ 대표자의 청소년분야 업무경력 및 자격 ○ 전문종사원(청소년지도사, 청소년상담사) 배치현황 및 확보계획	20
사업수행기관의 역량	○ 법인(단체)의 청소년사업 운영 실적 ○ 법인(단체)의 보유자산 ○ 법인(단체)의 보조금 대비 자부담 규모 ○ 법인(단체)의 사업장 소유여부 ○ 법인(단체)의 사업장 규모의 적정성 ○ 법인(단체)의 수련시설 장비보유 현황 ○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	40
사업계획 적정성	○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○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○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방안	20
시설운영능력 종합 평가	○ 질문에 대한 성실성, 수행의지, 가치관, 수행능력, 현실성 등 설명 청취 후 판단	10

※ 시설유형 및 위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3. 6. 30>

청소년시설 이용(변경)승인 신청서				
발급번호 : 제 호				
시 설 명				
신청인	주 소			
	성명 또는 대표자명	생년월일	(남/여)	
	단체명	전화		
내          용	이용시설명			
	이용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박 일)		
	이용목적			
	이용인원	명 (일반 명, 청소년 명)		
	이용료구분	[일반]		[감면]
	변경신청내용			
	변경신청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박 일)		
	변경신청사유			
	이용요금			
	첨 부	행사계획서 1부		
<p>「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(변경)승인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100px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신청자 : (서명 또는 날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left; margin-left: 50px;">용인시장 귀하</p>				
※ 구비서류 : 행사계획서				





